

문서번호 대의협 제0643 - 09251호

시행일자 2021. 11. 2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지침 개정(제1-1판) 안내(중앙방역대책본부)

1.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중앙방역대책본부-23028(2021.11.2.)

3.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중대한 이상반응자의 증명서 발급 절차 구체화, PCR음성 확인 통지 방법 등 일부 사항을 보완한 「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지침(제1-1판)」을 붙임과 같이 우리협회로 송부해온 바,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4. 아울러, 현장문의가 많은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발급 대상 중 "기타 건강상의 이유 해당자"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 가능함을 안내해온 바, 이를 함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음 -

○ 기타 건강상의 이유 해당자

- 진단서·소견서 상 ①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·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②백신접종 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경우(①,② 모두 충족해야함)에 한하여 발급

※ 붙임 : 1. 중앙방역대책본부공문 1부.

2. 주요 개정사항 1부.

3.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지침(제1-1판) 1부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

수신처 : 각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과목학회장), 대한개원의협의회장(각과개원의협의회장),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, 대한전공의협의회장, 대한공중보건협의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